

서울특별시 늘푸른 자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48
----------	------

2012년 10월 5일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9월 24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2년 9월 26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2년 10월 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욱)

- 늘푸른 자립학교(마포,노원)는 가출,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학력지원, 심리상담, 자립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시설로서
- 주요 위탁사무는 가출,성매매 피해 청소년 학력취득, 기술 습득, 성매매 재유입 방지교육과 자립훈련 및 취업도모 등이며,
- 위탁기간은 3년(2013. 1. 12 ~ 2016. 1. 11)임.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양재대)

1) 위탁사무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늘푸른 자립학교 운영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(예정)됨에 따라 동 시설에 관한 사무를 향후 3년 동안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1)에 의거해 서울시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- 시장이 상기 시설에 위탁하려는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검정고시 학력취득 (중, 고등반) 운영
 - 경제교육, 인턴십 과정 운영 및 기술습득
 - 성매매 재유입 방지 성교육, 성인지 교육
 - 쉼터 연계 및 자립훈련, 취업도모 등

2) 민간위탁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

- 늘푸른 자립학교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로서, 가출 및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학력취득을 도모하고 그밖에 심리 상담과 인턴십 과정 및 자립훈련 등을 제공하는 시설임. 현재 서울시에서는 마포자립학교(2009년 8월 개소)와 노원자립학교(2010년 5월 개소) 2곳이 설치·운영 중이며, 마포자립학교의 경우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(50:50)으로, 노원자립학교의 경우에는 서울시비 100%로 운영중임(2012년예산기준 2억1천만원 국비포함).

1) 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~4.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.
- 그런데, 상기 자립학교에 위탁하려는 사무는, 검정고시 학력취득(중, 고등반)운영 및 인턴십 과정 운영 및 자립훈련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,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.
- 더욱이, 자립학교 운영과정에서는 그 특성상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지속적 신뢰 형성에 따른 어려움이 크고, 이들의 학력취득 및 자립훈련 전 과정에서도 성매매 현상으로의 재유입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,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임.
- 따라서 상기 제출된 늘푸른 자립학교의 운영은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덧붙여, 상기 자립학교 운영은 전국 최초로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의 특성에 맞춘 대안학교로서, 그동안의 운영성과 측면에서 보면,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에게 취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자본(예. 학력 및 기타 취업기반 자격사항과 심리적 변화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자본)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며, 더

나아가 이 사업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국고매칭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상당하다 하겠음.

- 서울시가 이처럼 성매매피해여성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중앙정부 정책을 이끄는 선두적 역할을 해왔던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바, 향후에는 현재 시비100%로 운영되는 노원자립학교 운영 등을 포함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비 사업들 또한 국비매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 소관부서를 향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 및 촉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

○ 또한 상기 자립학교 운영을 포함하여, 가출·성매매 피해 십대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하여 예방·조기개입에서부터 학력 취득(자립학교)을 거쳐 취업연계(자립훈련매장)로 이어지는 ‘자립시스템 구축 정책²⁾’은 지난 2011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(성인지 분야)을 수상할 만큼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정책모델로 각광받고 있는바,

- 상기 자립시스템 구축 정책이 실제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의 자립기반으로서의 실효성을 견을 수 있도록, 향후 후속 정책대안 마련(예. 안정된 자립시스템 구축 모델 개발 및 관련 연구, 인턴십 프로그램 확충, 자립훈련 매장 확대, 자립학교 확대 등)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2) 자립시스템 구축정책은, 성매매피해 십대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흡한 인적자본 등으로 인해 다시 성매매현장으로 재유입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시키고 이들의 경제적 자활을 도울 수 있는 통합적 경제 자립모델이라 할 수 있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늘푸른 자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4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9월 2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늘푸른 자립학교(마포, 노원)는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22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계획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,
- 전문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가출,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학력지원, 심리상담, 인턴십 과정, 자립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시 늘푸른 자립학교 I (마포), II (노원)
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8-15번지 (마포)
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169-168 (노원)
- 시설규모 : 대지 540.5㎡, 건물 149.41㎡ (마포)
대지 102㎡, 건물 44.66㎡ (노원)
- 준공일자 : 2009. 8. 29 (마포), 2010. 5. 28(노원)
- 이용대상 : 가출, 성매매 피해 청소년 100명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3.1.12 ~ 2016.1.11)
- 위탁업무
 - 검정고시 학력취득 (중, 고등반) 운영
 - 경제교육, 인턴십 과정 운영 및 기술습득
 - 성매매 재유입 방지 성교육, 성인지 교육
 - 쉼터 연계 및 자립훈련, 취업도모 등
- 소요예산 : 연간 약 2억 2천만원 ※2012년 : 217,100천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재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 (여성복지증진)
 - 서울시 늘푸른 자립학교 민간위탁 추진계획(여성정책담당관-14563, 2012. 9)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- 늘푸른 자립학교 I (마포)
 - 1차 : 2009.8.19 ~ 2010.2.28 (6개월,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)
 - 2차 : 2010.3.24 ~ 2011.2.28 (11개월,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)
 - 3차 : 2011.3.21 ~ 2012.1.10 (10개월,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)
 - 4차 : 2012.1.12 ~ 2013.1.11 (1년,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)
 - 늘푸른 자립학교 II (노원)
 - 1차 : 2010.5.28 ~ 2010.12.31 (7개월, 청소년내길찾기)
 - 2차 : 2011.3.21 ~ 2012.1.10 (10개월, 청소년내길찾기)
 - 3차 : 2012.1.12 ~ 2013.1.11 (1년, 청소년내길찾기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시 늘푸른 자립학교의 경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대안학교로서, 市 직영시 동일조건의 장기간 근무한 인력이 운영할 경우,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,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서비스 질 하락이 예상되며,
- 또한,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22조(여성복지증진)
 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·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정, 미혼모, 장애인 여성, 가출 여성,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 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기타사항

- 서울시 늘푸른 자립학교 민간위탁 추진계획
(여성정책담당관-14563, 2012. 9)